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04

울 산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558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공사

피 고 1. [redacted]광역시 [redacted]군수

2. [redacted]광역시 [redacted]청장

변 론 종 결 2015. 9. 10.

판 결 선 고 2016. 2. 4.

주 문

1. 원고에 대하여,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군수가 2014. 9. 4. 한 재산세 6,364,320원의 부과처분 중 6,111,97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청장이 2014. 9. 5. 한 재산세 4,796,270원의 부과처분 중 4,606,0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04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출자를 받아 1983. 8. 18.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2014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4. 6. 1. 현재 주요주주는 정부 26.15%, 한국전력공사 20.47%, 지방자치단체 7.93%(서울특별시 3.34%, 경기도 1.02%, 인천광역시 0.57%, 부산광역시 0.55%, 경상남도 0.49%, 대구광역시 0.35%, 전라남도 0.34%, 대전광역시 0.32%, 광주광역시 0.28%, 경상북도 0.26%, 청주시 0.22%, 충청남도 0.16%, 강원도 0.04%) 등이다.

나.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군수(이하 '피고 [redacted]군수'라 한다)는 구 [redacted]군 군세 감면조례(2011. 12. 27. [redacted]광역시 [redacted]군 조례 제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이하 '피고 [redacted]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 구세 감면조례(2011. 12. 21.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 조례 제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각 조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원고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각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일정 비율(민간출자분 비율을 제외한 부분)을 감면하여 왔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85조의2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관할구역 소재 토지에 대하여 감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04

없이 피고 [redacted]군수는 2014. 9. 4. 2014년분 재산세 6,364,320원을, 피고 [redacted]구청장은 2014. 9. 5. 2014년분 재산세 4,796,27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2.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2. 1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지방자치단체는 원고의 설립등기 당시부터 자본금 납입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관련부처의 협의가 지체되어 납입이 지연된 것이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라는 문언은 반드시 설립시의 최초 자본금 납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출자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바 피고들이 위 문언을 당해 법인 설립등기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최초 자본금을 납입한 경우로 해석한 것은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부당한 축소해석이고, ② 한국가스공사법 제18조에 따라 원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라는 문언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그 처분금액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 제3호가 정하는 감면비율인 100분의 50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비율인 7.93%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04

곱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감면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 정책 등에 부응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②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의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미리 확정되고, 다만 실제 출자·출연행위는 관계기관의 업무 협의,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설립과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설립등기 후에 이루어진 법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47072판결 등 참조), 이에 더하여 ③ 원고를 설립하기 위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04

여 구 한국가스공사법(1986. 5. 12. 법률 제3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제정될 당시부터 원고의 자본금은 2천억 원으로 하되, 위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출자하도록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원고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④ 원고가 국가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출자받은 자본금으로 1983. 8. 18. 설립등기를 마치고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준비 중이던 1986년경 서울특별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장관회의 및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원고의 지분 3.12%를 취득한 것을 시작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원고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원고의 지분 7.93%를 보유하고 있는 점, ⑤ 당초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예정되어 있었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후 설립등기를 하였는지 그 전에 설립등기를 하였는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여부에 차별을 둘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① 출자법인이 상법에 따라 설립되지 아니하더라도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면 주식이 발행되고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익이 주주에게 배당되는 등 주식회사의 본질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점, ②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을 오로지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 해석할 경우에는 공공성이 강한 법인이 이윤의 창출을 추구하는 주식회사보다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어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③ 한국가스공사법 제18조에 의하면 원고에 관하여 같은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04

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④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법인의 주권이 상장되기 위해서는 그 법인이 법적 성격 및 운영 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될 것이 요구되는데, 원고의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 정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정당한 세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원고에 대한 정당한 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액에서 이 사건 각 처분액의 100분의 50에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4. 6. 1.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인 7.93%를 곱한 금액(감면액)을 공제한 액수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아래 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단위: 원)

처분청	과세대상	처분액	감면액	정당한 세액
[redacted]군수	[redacted]군 [redacted]면 [redacted]리 [redacted] 토지 외 10건	6,364,320	252,350	6,111,970
[redacted]구청장	[redacted]산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 토지 외 1건	4,796,270	190,180	4,606,090
합 계		11,160,590	442,530	10,718,060

3. 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04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해지

판사 우정민

판사 이수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04

관 계 법 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 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구 지방공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의3(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구 한국가스공사법(1986. 5. 12. 법률 제3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 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출자는 현금외의 재산으로도 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 한국가스공사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04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공사에 관하여 이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구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1986. 10. 6. 대통령령 제11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주식의 발행시기 및 주금의 납입액등)

① 국가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한다.

② 서울특별시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③ 한국전력공사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④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경우의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 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조례 (2011. 12. 27.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제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구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조례 (2011. 12. 21.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04

제13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